

의사상자 적용범위

구조행위란?

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
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.

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)

구조행위의 적용범위

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

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)

- 01 강도·절도·폭행·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
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
구조행위를 한 때
- 02 자동차·열차,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- 03 천재지변, 수난, 화재, 건물·축대·제방의 붕괴 등으로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- 04 천재지변, 수난, 화재, 건물·축대·제방의 붕괴 등으로
일어날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
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
구조행위를 한 때

- 0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- 06 해수욕장·하천·계곡, 그 밖의 장소에서
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
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- 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
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,
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
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
- 0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
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
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
적용예외

-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
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
-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
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

의로운
행동과
희생에 대한
예우

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



문의사항 |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사상자 업무 담당과
(예시: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주민생활지원과, 주민복지과 등)

의사상자 지원제도

“의사상자 지원제도”는

직무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

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

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(義死者)

또는 의상자(義傷者, 1~9급)로 인정하고,

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

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

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

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)

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



신청시 구비서류

-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
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·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,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

의사상자 지원내용

보상금

- 지급대상
의사자 유족(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및 형제자매)중 선순위자의
의상자 의사자 본인
- 지급금액 (2018년 기준 215,270천원)
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'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'
의상자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/100 ~ 5/100
*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-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
의료급여(1종)

의료급여법

- 대상 의사자 유족(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및 형제자매)
의상자 1~6급 의사자 본인
-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-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

교육보호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- 대상 의사자의 자녀, 1~6급 의상자 및 그 자녀
- 지원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
-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장제보호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- 대상 의사자
- 금액 75만원(2018년 기준)
*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
-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
취업보호

- 대상 의사자 유족 의사자의 배우자, 자녀, 조부모, 형제자매
의상자 1~6급 의사자 본인 및 가족(배우자, 자녀)
-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
국립묘지안장(이장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- 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(1~3급) 중 사망한 자
 -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회(보훈처 소관)이 안장을 결정할 경우 안장 가능

고궁 등의 이용지원

-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
의사자 유족증 유족 중 선순위자(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)
의상자 증 의사자 본인, 배우자, 자녀
-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

100/100	고궁 및 능원, 국공립 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 (대관공연 제외),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 제외), 국공립 수목원, 국공립 자연휴양림
50/100	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국공립 공공체육시설

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

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

-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, 자녀
- 신청 의상자(1~6급) 본인, 배우자, 자녀
- 가산점

의사자, 의상자 본인	의상자, 배우자, 자녀
만점의 5%	만점의 3%

* 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(6급 이하 대상)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시 적용

주택특별공급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- 대상 의사자 유족, 의사자
- 기준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(1세대 1주택 기준)
- 추천 특별공급지역 시·도지사